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

의안번호	제2026-21호	심의 · 의결 사항
심의·의결 일자	2026. 8. 13.	
공개여부	공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제 출 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출일자	2026. 8. 13.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심화, 디지털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생들이 주체적 사고력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시민교육의 중요성 증대
 - 민주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 등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 특별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마련
- ⇒ 학교시민교육의 주요원칙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수용성 높은 정책화를 추진

□ 추진 경과

- 시민교육의 개념, 기본내용, 교육활동상 원칙 등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25.12.22~'26.6.21, 제1~13차 회의 개최)
- 학교시민교육 관련 의견수렴 추진계획(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검토('26.7.6.25, 제15차 회의)
 - 체계적인 기획을 위해 학교시민교육 의견수렴 기획TF를 구성·운영 (7.1~7.14, 총 3차례 회의)하여 세부 논의 주제 및 토의 질문을 도출
 - ※ 구성: 국민참여위원장, 의견수렴·조정 전문위 위원, 민주시민교육 특위 담당 전문위원 등
- 교원단체 의견수렴 추진('26.7.15~7.22, 서면)
 - ※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6개 단체)
-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추진('26.7.22~7.31)
- 학교시민교육 관련 의견수렴 결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보고('26.8.6, 제17차 회의)

II 기본원칙(안) 개요

□ 구성 및 체계

- (구성) 전문 및 3개 장,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
- (전문) 원칙 수립의 배경, 취지 및 비전 제시
- (제1장 총강) 학교시민교육의 정의·적용범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자 현장판단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제1조~제6조)
 - ※ 정의: 헌법 가치에 기초해 공공문제를 사실·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다원성·절차를 존중하며 공적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 함양 교육
- (제2장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제7조~제11조)
 - ※ ① 헌법의 가치와 원리 ②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③ 자유의 한계와 책임 ④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⑤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 (제3장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 명확성·논쟁성, 시의성, 안전성 등 교육활동 수행상의 원칙 규정(제12조~제14조)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보호) 기본원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 (명확성, 논쟁성)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관련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명확하게 교육**하되(제12조 제1항),
 -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교육하도록 구별하여 규정(제12조 제1항)
- (시의성의 원칙)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교육 주제로 적극 수용
- (안전성의 원칙)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자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 압력·간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

III 의견수렴 개요 및 결과

□ 교원단체 주요 의견

- (교사노조)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 감사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보호장치 제도화**
 - ※ 국교위·교육부 간 정책적 관계 재정립, 부당한 압력에 대한 구제 절차의 실제적 규정
- (전교조) 이의제기·민원 발생 시 학교장·교육청·교육부 각 주체별 역할 규정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적 보호의 실행력 확보**
 - ※ **명확성·논쟁성 판단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 정치적 중립성 개념 명확화(교원정치기본권 보장문제 병행 논의 필요), 입법적 뒷받침 및 사회적 속의 필요성 제언
- (한국교총)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룰 때 **일방적·정치 편향적 교육**을 방지하는 내용 명문화, 비교육적인 용어인 ‘반(反)시민적 행위’ 용어 수정 필요

□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 온·오프라인 토론회 >

- (일시/장소) ^[1회차] 7.22.(수) 19:30~22:00 온라인
 - ^[2회차] 7.23.(목) 14:00~17:00 부산(부산광역시교육청 협업)
 - ^[3회차] 7.25.(토) 10:00~12:30 온라인
- (참석) 총 314명(국민참여위원 257명, 부산광역시교육청 57명)

구분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지자체 추천	계
7.22(수) 온라인	39	30	42	14	4	129
7.23(수) 국민참여위원	12	9	6	2	3	32
오프라인 부산광역시교육청	27	10	20	-	-	57
7.25(토) 온라인	18	26	32	13	7	96
계	96	75	100	29	14	314

- ① (질문1) AI시대, 학생들이 주체적 사고력과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 ② (질문2) 이 원칙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안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③ (질문3) 이 원칙안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의견수렴〉

- (일시) 7.20(월) ~ 7.31(금), 2주간 (국민의견플랫폼, ne.go.kr)
- (주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 질문은 토론회 질문(3개)과 동일
 - 원칙(안)의 배경·취지, 주요내용 등 설명 영상(국가교육위원장)을 국민의견 플랫폼에 탑재하여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 (홍보) 보도자료 배포(7.20.) 및 시도교육청을 통한 가정통신문 배포 협조 요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대상 참여 홍보 요청
 - ※ 국민의견수렴 홍보 영상 KTV 송출(7.22~7.31, 총 20회), 기본원칙(안) 설명 영상 유튜브(국교위) 게시(7.23.) 및 카드뉴스 게시
- (의견 제출) 총 108개

〈의견수렴 주요 내용〉

【질문1】 AI시대 학교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 (내용) 비판적 사고, AI 정보 윤리 등 디지털 리터러시, 책임·의무 등 시민의식과 공동체 가치, 소통과 관계 역량 순으로 많이 언급
- (방법) 글쓰기, 토론수업 등 참여·실천 중심의 교육이 가장 많이 제시

“AI 시대의 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해 책임 있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7/25 온라인 토론>

“사고 과정 전체를 AI에 맡기지 않도록, AI 답변의 오류·편향을 검증하고 자기 언어로 설명하는 주체적 판단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온라인 의견수렴>

“공동체 의식 교육이 중요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7/25 온라인 토론>

“이론적인 내용은 책이나 AI 검색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적 소통과 공감, 협동은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 <7/22 온라인 토론>

“학교시민교육은 학생회장 선거나 수업 내 토론과 같이 학교생활 전반과 전 교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실천되어야 한다.” <7/23 현장토론회>

“특정 정당이나 교사 개인 이념을 강요해선 안 되며 권리 주장과 함께 타인 존중, 질서, 책임을 균형 있게 가르칠 수업 중립 기준이 필요하다.” <온라인 의견수렴>

【질문2】 원칙안 중 핵심적인 내용 및 현장 필요 사항

- 제14조(안전성의 원칙),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제12조(명확성과 논쟁성), 제5조(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핵심적 조항으로 응답
 - ※ 온·오프라인 토론회 설문 결과 : 제14조 31%, 제11조 23.5%, 제12조 22.8% 등
- 학생과 교원에 대한 안전지대가 확보되어야 원칙이 실효성을 갖게 되며, 학생 자치 강화 및 실질화, 민원·소송으로부터 교사 보호가 중요
- 토론·참여·프로젝트 수업으로의 전환 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설계, 민원 보호 기관·절차 등 제도화 법제화 및 국가지원 기반 필요성 제안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다양한 모습들을 주제로 삼아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교육 실행해야 한다.” <7/25 온라인 토론>

“뉴스, 유튜브, SNS 쇼츠 알고리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혐오와 차별적 편견을 쉽게 습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교육이 필수적임.” <7/25 온라인 토론>

“부당한 민원 발생 시 우선 민원과 차단하고, 교사가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대처해주어야 한다.” <7/22 온라인 토론>

“교사가 민원 오해 없이 토론 수업에 집중하도록 구체적 학습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학교-가정 간 신뢰 편차를 줄일 학부모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온라인 의견수렴>

【질문3】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

- 학생들의 실천적 참여 강화, 정당한 의사표명에 대한 불이익 우려 해소 등 학생 관련 조항 강조가 필요하며, ‘반(反)시민적 행위’ 용어 수정
- 명확성과 논쟁성의 기준, 정치적 중립 기준 등을 세부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통해 구체화하고, 민원 분쟁 조정 기구 등 실행력 확보 장치 필요

“(제3조)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시민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학생의 실천적 참여 강화” <7/22 온라인 토론>

“(제14조) 학생들이 정당한 의사 표명 후 평가나 학교 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7/25 온라인 토론>

“(제11조) ‘반시민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강한 표현인 것 같아,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7/23 현장토론회>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토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보완되면 현장에서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7/22 온라인 토론>

IV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제안

※ [붙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참고

□ 원칙(안) 수정 내용

구분	수정내용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 “반시민적 행위”→“ 민주시민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 ”
제12조(명확성, 논쟁성)	■ 제1항과 제2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문 제목 수정 ■ 정치적 중립성 유지 내용 앞에 “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 추가 설명
제13조(시의성의 원칙)	■ “다룬다”→“ 다룰 수 있다 ”
제14조(안정성의 원칙)	■ 학생과 교원 조항 분리 ■ 학생이 의견표현과 자치활동 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용 추가: “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 ■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 다양한 ” 자치활동으로 수정

V 향후 추진계획(안)

□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본위원회 심의(8.13)

□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정책화 추진

붙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전문

오늘날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교실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파적 시비를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조건적 중립이나 일방적 주입으로 미래 우리 사회 주인공들의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야 함을 통감하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적 기본원칙을 세운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 교육을 금지하는 한편,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시민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원칙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담고자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과 기본원칙을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합의를 통해 학교는 시민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은 공공의 문제에 관한 주체적 판단력과 시민성을 함양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제1장 총강

제1조(학교시민교육의 정의) 학교시민교육은 헌법의 가치와 질서에 기초하여, 학생이 공공 문제를 사실과 근거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며, 다원성과 절차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공적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원칙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제2장의 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 ①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가 실천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시민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학부모·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는 헌법상의 핵심 가치의 범위 안에서 학생과 가정의 다양한 신념과 세계관을 존중한다.

제4조(교육 현장 판단의 존중) 교육자가 학교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현장 상황에 적응하여 내리는 판단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교육자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이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적 의사의 정의) 제5조의 교육적 의사란 학생의 시민적 역량과 품성 함양,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말한다.

제2장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제7조(헌법의 가치와 원리) 학교는 학생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국제 평화와 통일 지향 등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제8조(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학교는 학생에게 존중과 관용,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제9조(자유와 한계와 책임) 학교는 학생에게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책임이 걸여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제10조(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① 학교는 학생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가르친다.
② 학교는 학생이 디지털 및 대면 공론장의 작동 방식, 그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판단 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친다.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의 배격) ①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 시민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

제3장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

제12조(명확성, 논쟁성) ① 제2장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교육한다.

② 제1항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중 그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일방적·편향적 주입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제13조(시의성의 원칙)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룰 수 있다.

제14조(안전성의 원칙) ① 학생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양한 자치 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